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학교운동부 안전대책
수립 포함〉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26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학교운동부 안전대책 수립 포함 (안 제32조제1항)	2
2. 개정안 부칙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을호 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1. 16.

3. 회 부 일 : 2025. 1.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운동부가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이자 중요한 교육활동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운동선수의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교육부 지침인 「학교체육 활성화 시행계획」에는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권고사항에 지침에 따라 개별 학교차원에서 학교운동부의 안전에 관한 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학교운동부 선수의 안전을 위해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뿐만 아니라 학교운동부의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학교운동부 선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2호).

Ⅲ. 검토의견

1.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학교운동부 안전대책 수립 포함(안 제32조제1항)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학교운동부의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제32조(기능) ① ----- ----- -----. -----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학교운동부의 구성· <u>운영</u>	12. ----- <u>운영 및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u>
13.·14. (생략)	13.·14.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학교안전중앙공제회의 “2024년 학교안전사고 및 보상통계”를 살펴보면 2024년의 경우 학교¹⁾에서 총 211,650명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중 스포츠활동²⁾은 118,479명으로 전체 안전사고의 5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학교안전사고 통계(사고당시활동별)]

구분	학습 활동	스포츠 활동	일상 활동	이동	싸움	기타	합계
인원(명)	14,898	118,479	43,789	29,423	63	4,998	211,650
비율(%)	7	56	20.7	13.9	0	2.3	100

자료 : 학교안전중앙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되고 있는 안전사고는 단순한 물리적 부상을 넘어 학생의 정서적 외상, 학부모와의 갈등, 교육활동 중단, 교사의 법적·행정적 책임 부담 등 다양한 문제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³⁾, 학교에서의 스포츠활동시 안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학교운동부의 경우 일반 체육 수업 보다 더 세밀한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한편,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 및 운영되고 있고⁴⁾,

1)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 학교로 구성됨.

2) 구기, 라켓 스포츠, 타겟형 스포츠, 바퀴달린 무동력 스포츠, 육상, 무도, 수중, 설상·빙상, 체조·무용·매트운동, 기타 스포츠활동으로 구성됨.

3) 최진주, 학교 체육 안전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융합과 통섭 2025 제8권 제4호, p23

4)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

현행법은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음.

[학교운영위원회 (법정)심의사항]

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개정안은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의 안전을 위해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뿐만 아니라 학교운동부의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도 학

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학교운동부 선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 현재 「학교체육 진흥법」에서는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⁵⁾⁶⁾ 이는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교육부는 “2025년 학교체육 활성화 시행계획”에서 단위학교에서 학교운동부의 운영 계획 수립시 훈련·대회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시행하도록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나⁷⁾, 개별학교 차원에서 학교운동부의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개정안은 학교운동부의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별도 심의사항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학교운동부의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도 학교운영위원회의 별도 법정 심의사항이 되는 경우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현행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학교운동부 운영과 학교 예산

5)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④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학교체육 진흥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침해(폭력, 성폭력 등)가 발생한 때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2025년 학교체육 활성화 시행계획, 2025.2, 교육부, p34

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호장비 구입 등 안전대책 실행을 위하여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 보다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학교사고 후 처리 보다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훈련방식·합숙·대회참가·의료응급체계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장치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안전대책에는 시설물 안전 점검, 훈련강도, 종목별 위험요소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운영위원회의 안전대책 심의 시 형식적 심의 및 추상적 원칙 확인에 그치는 경우 학교에서 마련한 안전대책을 승인하는 역할에 불과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전문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⁸⁾.

2. 개정안 부칙

8)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 없음 의견임.

가. 개정안의 요지

- ☐ 안 부칙은 개정안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일반적으로 법률의 시행이 긴급한 경우 또는 부령의 정비가 수반되는 법률의 경우는 3개월, 대통령령의 정비가 수반되는 법률의 경우는 6개월, 기관의 설립 및 인력의 채용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통상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데⁹⁾, 개정안의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긴급한 시행을 위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6

9)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법제실, p821